

사단 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관

(시행 2003. 10. 01)
(개정 2005. 07. 19)
(개정 2007. 01. 04)
(개정 2009. 01. 21)
(개정 2010. 12. 10)
(개정 2012. 01. 12)
(개정 2013. 04. 23)
(개정 2016. 01.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성평등적인 개념에 입각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 평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약칭 여성과총)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Federation of Women's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s (KOFWST)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적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 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및 교류 지원에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에 관한 용역과 수탁 사업
- ④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 ⑤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풍토조성 사업
- ⑥ 여성과학기술단체 창립·발전 지원
- ⑦ 여성과학기술회관의 건립과 운영
- ⑧ 국제 여성과학기술단체와의 교류 증진
- ⑨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협력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의 단체로 회원 중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의 여성위원회로서, 여성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로 한다. 단 회원 100인 미만의 단체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⑤ 회원의 자격요건, 입회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표창, 징계 및 자격상실)

- 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
 - 3. 이사 6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당연직 이사
 - 5.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최소 6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총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취임이전에 유고된 때는 다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인 중앙부처 관계국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직 이사의 수는 정회원 단체 부문별로 균형 있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 ⑤ **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⑥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

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치 않을 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를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단 및 차기회장)

- ①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 이사회를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차기회장은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단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은 각 단체장과 단체장이 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 각 단체의 대의원 수는 소속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구분 (회원수)	단체장 포함 대의원수 (명)
정회원	100~300	4
	301~500	6
	501 이상	8

- ③ 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를 의결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총회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5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대의원 1인 이상의 출석으로 그 단체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임시총회에서는 소집보고 시에 통고한 이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
- ④ 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手授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 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
 - 5. 제 규정의 제정
 -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 이사의 수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 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 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기 타 회 의

제26조 (평의회)

평의회는 정회원 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7조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업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위원회 및 부설기구)

- ① 제21조 제4호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부회장이나 전현직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인사로 한다. 위원들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7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 (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사업수입금
 5. 기부금과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제30조 (자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보통재산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본회 자산 중 제1항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1조 (회비)

- ① 정회원 단체의 연회비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며, 대의원 1인당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여성과학기술회관 건립, 기타 요구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의 소속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협력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세입세출예산)

-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 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사무처

제34조 (사무처)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상근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부칙 (2016.01.15.)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23.)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정관은 2012년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진부터 적용된다.

부칙 (2012.01.12.)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2011년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09년 3차로 개정된 정관에 따라 1년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2012년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진부터 적용된다.

부칙 (2010.12.10.)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2011년, 2012년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구 정관에 따라 1년으로 한다.

부칙 (2009.01.2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10월 1일 시행)

(2005년 7월 19일 개정)

(2007년 1월 4일 개정)

(2009년 1월 21일 개정)

부칙 (2007.01.04.)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10월 1일 시행)

(2005년 7월 19일 개정)

(2007년 1월 4일 개정)

부칙 (2005.07.19.)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10월 1일 시행)

(2005년 7월 19일 개정)

부칙 (2003.10.0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10월 1일 시행)

원본대조필